

비엔피파리바증권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제정 2025.02.11

I. 취지

이 설명서는 비엔피파리바증권(이하 "회사")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 제6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7조의3 및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제4-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이하 "상품")의 매매(영 제6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는 제외)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이하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II. 회사의 최선집행기준

1. 적용 대상 증권의 범위

회사의 최선집행기준 적용 대상이 되는 증권은 다음과 같음

-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2. 회사의 최선집행기준

집행시장의 성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한국거래소 시장으로 전송하는 것을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으로 정함**

1956년 증권시장 개설 이래 한국거래소 시장이 단일시장으로 운영되어 온 만큼 시장의

안정성, 유동성 등이 타시장에 비하여 우수하며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도도 높기 때문임

또한 회사는 약 7,400여개의 계좌에 대한 위탁매매 업무만 영위하고 있으므로, 복수시장 체제 도입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투자비용 대비 투자자 효익을 검토하였을 때 단일시장 선택을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으로 하는 것이 고객에게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Ⅲ. 그 외 안내 사항

1. 결과 책임 미귀속

회사의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자가 요청한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는 절차상의 책임임. 회사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주문시점에 회사가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였다면, 그 주문 결과의 책임은 회사에 미귀속

2. 최선집행기준 점검 및 공표 (영 §66의2③, ⑤)

가. 회사는 3개월마다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하고, 이 기준의 내용이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을 변경하고 그 변경 사실을 공표

나. 회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공표하거나 또는 가.에 따라 그 변경 사실(변경 이유를 포함한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함

- 1) 회사의 본점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법
- 2)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3. 설명서 교부 (법 §68④, 영 §66의2⑥)

회사의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는 투자자 본인에게 교부하거나 주문 등의 대리권을 위임 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교부

4. 최선집행 관련 증빙 제공 (영 §66의2④, 금투업규정 §4-17①)

투자자는 투자자의 주문이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된 경우, 해당 투자자가 그 주문이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증빙 제공 의무가 있음

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제공할 수 있음

- 1) 서면 교부
- 2)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나. 서면등에는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함

- 1) 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 2)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
- 3)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다. 투자자가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나.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 등을 제공하여야함

5. 기록·유지 기간 (영 §66의2⑦, 금투업규정 §4-17②)

회사는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 및 고객의 주문을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한 내역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10년 이상 기록·유지